

예산군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예고

「지방자치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군의회에서 심사할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4일

예산군의회 의장



1. 조례안 목록

조례안	대표발의의원	비고
예산군 농자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산군의회 의장	
예산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규칙안	이길원	
예산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장순관	
예산군 청년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안	강선구	
예산군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	〃	
예산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	〃	
예산군 맛집 지정 및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	
예산군 식품 판매 무인매장 위생관리 조례안	〃	
예산군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김영진	
예산군 공공시설 내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정순	
예산군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	김태금	
예산군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이길원	
예산군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	〃	
예산군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완예	
예산군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임종용	
예산군 임업인 등의 권익증진 및 소득증대 지원 조례안	박중수	

※ 조례안 : 따로 붙임 참조

2.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5. 6. 10.(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산군의회의회장(참조 :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

- 개 인 :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관·단체 :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제 출 처 : 예산군의회 의회사무과

- 주 소 : (32435) 충남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22

- 전 화 : 041-339-7092 (FAX :041-339-7099)

○ 제출방법 : 우편(4월 11일까지 도착분), FAX, 직접방문,

인터넷(예산군의회 홈페이지 <http://www.councilyesan.go.kr>)

※ 붙임 :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